

- 기존 안전관리 시설장비 4종과 온열질환 예방 시설장비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1차 및 2차 지원자여도 지원한도(1천만원의 70% 700만원) 남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이 지원대상 업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 1인 1척당 1천만원 한도내 70%인 700만원 까지 지원
-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제2026-076호 >

2026년 제3차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 제3차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통해 시설·장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07월 31일까지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6년 제3차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 나. 사업목적 : 어선원 중대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어선 사업장 조업작업 환경 개선 장비·설비 도입비 지원
- 다. 지원대상 : 「어선안전조업법」 4장의 2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 중 초고위험·고위험 분류 허가 업종 13개 어선주
- 근해고정자루망어업(근해안강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자망, 근해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연승, 연안고정자루망(연안(개량)안강망),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 1 -

- 라. 지원사항 : 대상 어선 1척 당 지원물품 도입 비용 최대 70% 지원
- (지원한도) 1인 1척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최대 7백만원(70%) 지원
 - (지원품목)

- 어선원 안전관리 장비 4종

구분	전북·출감김 예방장비 야간조업용 카메라	화재발생 예방장비 전기레인지	안전사고 예방장비 어선용 CCTV	선박충돌 예방장비 충돌방지시스템
설명	야간 운항작업 시 위험장태를 식별용 조업 보조장비	선내 취사 시 전기사용을 통한 화재·폭발 사고방지	선상 작업환경 모니터링 어선원 작업 안전관리 보조장비	어선 운항 시 선박 충돌 알람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장비

- 어선원 보건관리(온열질환) 장비 4종

구분	탈수·온열질환 예방			식중독 예방
	이동식 냉풍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설명	작업장 내 체감온도를 낮춰 온열질환 예방	작업장 온·습도 조절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	휴게시설 등 비치하여 어선원 탈수 예방, 쾌적 조업 환경 조성	식품 보관상태 개선을 통한 폭염재해 예방

○ (지원범위) 물품구매비 및 설치·검사비

- 1차·2차 신청자 중 지원 한도 내 신청자는 한도 내 추가 지원(희망 시)
 - ※ (예시) 1차에 지원한 어업인이 물품비 500만원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350만원 (70%)지원을 받고, 1천만원의 70% 한도 차액인 350만원 내 추가 지원 가능
- 장비구매비 외 전기공사 등 부대비용 발생 시 지원자가 우선 납부하고 사후정산
 - ※ 물품구매비와 부대비용 지원액의 합계는 지원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상물품 중 교차·중복선택 가능,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자부담
- 물품구매는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계통구매 절차 활용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 물품비에 대한 자부담금 입금 필요 (지역수협, 30%)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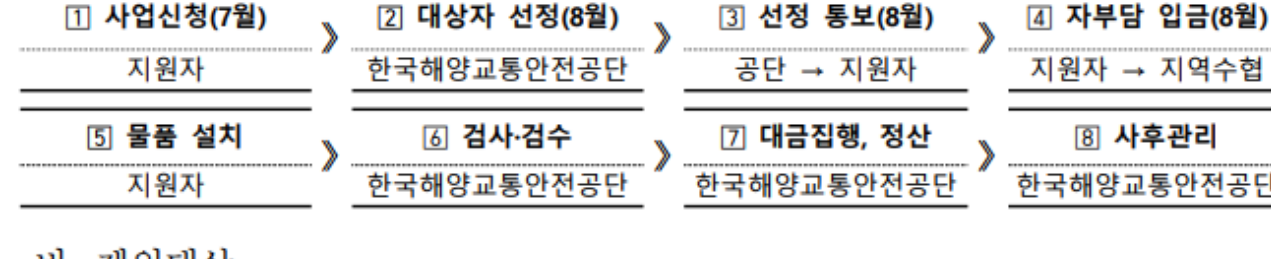
2. 사업신청

- 가.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의 어선을 소유한 자 또는 법인·단체
- 나.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31.(금)
- 다.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물품 중 희망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지역수협)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상세사항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3]
2) 선적서류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분증 사본

라. 제출처 : 지역수협 (업종별·지구별)

마. 진행절차



바. 제외대상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업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25년 말 기준) 안전·보건 관련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가족(부부 등) 이 어선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 3 -

- 사.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지원대상에 부합 하며 제외·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됨. 지원대상자는 개별 통보
- 지원대상자 간 경합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순위	주요내용
1순위	어선원안전감독관 추천순 (감독관 추천은 신청자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 절차에 따름)
2순위	접수 순서에 따르되, 경합 시 업종별, 수상내역, 승선인원수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수산업, 어업, 안전, 공로 등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유관단체 포상 해당자는 증명자료 제출)

3. 유의사항

- 가. 사업량은 신청여건, 예산한도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나. 지원 금액 초과분은 전액 자기 부담(자부담)
- (물품비용) 물품신청 후 물품비의 30% 자부담금 지역수협에 입금 (별도 통보)
 - (부대비용) 지원자가 결제 후 대금 청구 시 사후 정산 (검사비 30% 자부담)
- 다. 증빙서류는 접수 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라. 본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 등은 「해양수산업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침」 과 「2026년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에 따름
- 마. 지원받은 장비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
- *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법률 및 규정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불가피한 사정 없이(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 포함)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수산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사. 지원대상자가 선정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자부담금 입금 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 아. 기타 상기 내용 외 지침 및 규정 위반 사항 발생 시 본인 귀책

4. 문의처

구분	문의처
사업내용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실 (TEL : 044-330-2552)
접수관련 문의	지역수협(지구별, 업종별)
제품관련 문의	어업기자재협회 (TEL : 051-244-4955)

- 4 -